



MINI Market Report

국가	싱가포르, 베트남
제품	김치

주관사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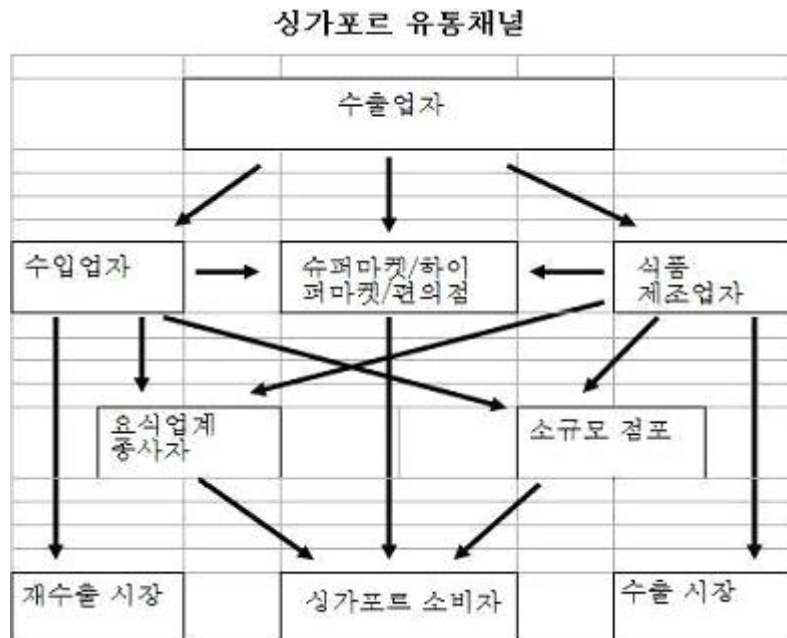
I. 싱가포르 유통 정보	1
1. 싱가포르 유통 구조	1
2. 싱가포르 식품 유통업체 현황	4
II. 싱가포르 통관 정보	6
1. 싱가포르 관세 현황	6
2. 싱가포르 수입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	7
3. 싱가포르 원산지 규정	7
III. 싱가포르 검역 정보	14
IV. 싱가포르 라벨링 정보	16
V. 베트남 시장 정보	24
1. 베트남 수입추이	24
2. 베트남 김치 시장동향	25
3. 베트남 김치 경쟁사 동향	25
VI. 베트남 통관 정보	27
1. 베트남 관세 현황	27
2. 베트남 통관 제도	28
3. 베트남 통관 수속	29
4. 베트남 수입식품 검사절차	31
VII. 베트남 검역 정보	35
VIII. 베트남 라벨링 정보	37
1. 일반 조항	37
2. 상품의 라벨에 대한 위반 처리	39
3. 품목별 표기방법	40

※ 참고자료

I 싱가포르 유통 정보

1. 싱가포르 유통 구조

□ 유통 구조



1) 도매업의 발달이 저조한 시장

- 유통구조를 보면, 대부분 수입업체로부터 도매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매업체로 연결되고 있으며, 도매상은 주류, 음료, 농산물 등 일부 분야로 제한
- 싱가포르 소비자는 물론 연간 700만명 이상에 달하는 방문자를 겨냥하여 소매업은 상당히 발달해 있으며, 그 형태는 대규모 쇼핑몰, 백화점, 양판점, 전문점, 슈퍼마켓 등 다양
- 유통분야에는 외국자본이 대거 들어와 있는데, 특히 일본계의 진출이 두드러짐
- 싱가포르에 진출한 대표적인 외국 유통기업으로는 Takashimaya, Isetan, Seiyu, Daimaru, Robinson, Courts, Metro 등

2) 초현대식 쇼핑센터와 재래시장이 공존

- 수많은 현대식 쇼핑센터들이 있지만, 시내 곳곳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태의 재래시장들도 자리 잡고 있음
- 재래시장은 주로 서민층이 많이 사는 아파트촌(HDB라고 불리며 우리나라의 주공아파트에 해당됨)을 끼고 형성
- 쇼핑센터들은 최대 변화가인 Orchard 거리를 비롯하여 Marina Square, Suntec city 등에 집중되어 있는데 통상 여러 쇼핑센터, 백화점들이 모여 거대한 상권을 이루고 있음

3) 단순한 유통구조

- 유통구조가 무역업, 도매, 소매 등으로 뚜렷이 구별되어 있지 않으며 도매업이 낙후되어 있어 수입품이나 국산품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상거래 활동이 수입업자 또는 생산자와 소매상간 지정 대리점을 통한 직접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도매업은 주류, 음료, 통조림, 농산물 등 일부 상품에만 국한 되어 있음
- 유통 단계가 복잡하지 않음에 따라 중간상의 마진율이 낮은 편이며, 매장의 위치(백화점, 아파트 상가)에 따라 마진율이 10~30%의 차를 보임

4)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전자상거래의 비활성화

- 무역, 조달, 물류부문을 중심으로 B2B 전자상거래는 정부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높은 수준에 있으나, B2C 거래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며 우리나라와 비교할 경우 크게 떨어진다고 평가됨
- B2C는 서적, 컴퓨터 소프트웨어/주변기기, 전자제품 등이 주로 거래되는 정도
- B2C가 부진한 이유로 싱가포르가 작은 도시국가로 가정과 쇼핑센터의 거리가 가까워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

□ 유통 단계별 물류 인프라 구축 수준

- 유통단계가 복잡하지 않고 소매유통 하나로 볼 정도로 단일화 된 유통이기 때문에 유

통 단계를 구분 짓지 않음

- 국내 물류 인프라 : 잘 발달된 도로

- 총 길이 : 3,234km(국토의 12% 차지)
- 말레이시아에 연결된 Causeway와 Secon Link
- 교통 모니터링과 통행료 정책으로 잘 관리되는 교통 혼잡
- 철도의 경우 물류 이용도 0%, 승객용 철도만 운영되고 있음

- 국제 물류 인프라 : 항공, 항만

- 물류부분 매출의 70%이상 차지

- 항만부분

- PSA와 Julong 컨테이너 터미널로 구성
- 80% 정도의 화물이 환적(환적 화물선)
- 현대적인 항구와 화물관리시설, EDI 시스템을 도입한 효율적인 시설 가동
- 미래의 수요에 대비한 지속적인 투자와 시설 확충

- 항공부분

- 9개의 공항
- 화물 관리 시설이 있는 공항은 Changi 국제공항 한곳이지만 충분한 공급으로 수요-공급의 균형이 유지
- 항공화물 처리량 아시아 5위권
- 싱가포르의 북동쪽에 위치하며 도심에서 25분(접근성 뛰어남)
- 미래의 수요에 대비하여 공항을 넓히기 위한 지속적 투자가 이루어짐

2. 싱가포르 식품 유통업체 현황

□ 싱가포르의 5대 유통업체

- 싱가포르의 1, 2위 유통업체인 NTUC Fairprice과 Cold Storage는 2000년 초반부터 경쟁적으로 경쟁사 인수합병, 소형 가족형 슈퍼 인수 등을 통하여 매장을 확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통합구매방식, JIT 경영시스템 도입, 온라인 주문, 배달제, PB상품 확대 등을 실시
- Meidi-Ya는 2008년부터 일부 품목에 대하여 온라인주문, 배달제를, 3위 업체인 Sheng Siong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현재 전산구매시스템을 연구 중에 있음
- Carrefour 및 Isetan은 아직까지 온라인 주문, 배달이 불가능함

<싱가포르 대형 유통업체 한국식품 입점 현황>

업체명	입점 품목	납품 업체
NTUC Fairprice	농심 라면	Naspac Marketing
	삼양/오뚜기 라면	Sing Long Foodstuff
	오뚜기 소스/과자류	
	버섯	Champ Fungi
Cold Storage	라면	Naspac(농심), Sing Long(삼양, 오뚜기), 자체 창고(Jurong)
	종가집 김치	KMG Enterprise
	소스	Sing Long Foodstuff
	버섯	Champ Fungi
Sheng Siong	라면	Naspac(농심), Sing Long(삼양, 오뚜기) 매장으로 직접 배송
	버섯	Ban Chonn
Giant	라면	Naspac(농심), Sing Long(삼양, 오뚜기)
	버섯	Champ Fungi
Carrfour	라면	Naspac(농심), Sing Long(삼양, 오뚜기)
	종가집 김치	KMG Enterprise
	소스/과자	Sing Long Foodstuff
	버섯	Champ Fungi

□ 한국식품 주요 유통 경로 및 유통 경로별 비중

- 싱가포르에는 다음과 같은 수입업체 및 한인 슈퍼가 있음

<싱가포르 대형유통업체 매장현황>

	업체명(유통매장명)	취급 상품	조달 방법	비고
수입 업체	KMG Enterprise	종가집 김치	100% 직수입	솔마트 운영
	Naspan Marketing	농심 라면	100% 직수입	
	Sing Long Foodstuff	삼양, 오뚜기, 외	100% 직수입	샤인코리아(2개매장) 운영
	Sincere Fods	영풍 맛다문	100% 직수입	Isetan, Meidi-Ya 만남품
	Ban Choon	버섯	100% 직수입	
한인 슈퍼	Dae Dong Enterprise (에스마트)	일반식품, 잡화	70% 직수입	
	Koreana (코리아나유통)	일반식품, 잡화	90% 직수입	
	Lotte Mart (롯데마트)	일반식품, 잡화	70% 직수입	
	Seoul Mart (서울슈퍼)	일반식품, 잡화	90% 직수입	한국소재 유통업체 이용
	Seoul Plaza Trading (한국종합구판장)	일반식품, 잡화	90% 직수입	
	Shine Korea (샤인 코리아)	일반식품, 잡화	100% 직수입	수입업체 Sing Long 직영점
	SK Retail (싱가폴할인마트)	일반식품, 잡화	95% 직수입	온라인 판매업체
	Sol Mart (솔마트)	일반식품, 잡화	100% 직수입	수입업체 KMG Enterprise 직영 (4개 점포)

- 한인 슈퍼들은 자체 판매를 위해서만 수입을 하며, 수입업체들은 직영 슈퍼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형유통업체 납품에 주력함

II 싱가포르 통관 정보

1. 관세 현황

관세율

HS CODE	국문품명	관세율
2005.99	조제된 또는 저장 처리된 기타 채소	면세

싱가포르의 관세

- 전통적으로 개방경제를 추구해 온 싱가포르는 일부 품목(주류, 담배, 유류, 자동차)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관세와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뿐,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여 자유무역을 장려해 오고 있음
- 관세(Customs Duty)가 부과되는 품목은 HS 8단위 기준 8,285개 품목중 아래와 같은 6개 품목(주류)에 국한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동 6개 품목에 대한 관세도 한·싱 FTA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아 완전히 면제 되고 있음

HS CODE	품목명	관세	특소세
22030010	Stout or porter	S\$16.00 / litre of alcohol	S\$48.00 / litre of alcohol
22030090	Other beer including ale		
22089010	Medicated samsu, not exceeding 40% alc/vol	S\$8.00 / litre of alcohol	S\$70.00 / litre of alcohol
22089020	Medicated samsu, exceeding 40% alc/vol		
22089030	Other samsu, not exceeding 40% alc/vol		
22089040	Other samsu, exceeding 40% alc/vol		

- 싱가포르 정부는 환경보호, 보건증진 등을 위한 국내소비 억제 차원에서 수입물품 중 주류(52개 품목), 담배(28개), 유류(6개), 자동차(100개) 등 4개 품목군, 186개 품목에 대해 특별소비세(excise duty)를 부과하고 있음

□ 수입부과금

- 수입물품에 대한 부과금은 없으나, 수입통관 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GST(Goods and Service Tax)를 납부해야 함
- GST 세율은 1994.4.1일 최초 도입당시 3%이었으나, 몇 차례의 인상과정을 거쳐 2007.7.1일부터 7%가 적용되고 있음

□ 통관절차상의 장벽

- 중계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의 통관절차를 매우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무역의 흐름을 저해한다고 지적되고 있는 통관장벽은 없음
- 수출입과 환적 신고는 모두 무역자동화망(TradeNet)을 통해 서류 없이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관세, GST 등의 납부도 무역업자와 은행계좌와 자동으로 연계되어 처리되고 있음

2. 싱가포르 수입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

□ 통관절차 개요

- 상품의 통관은 수화인 또는 수화인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반입 화물은 싱가포르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세관에 통관 신청을 하여야 함
- 반출 물품은 싱가포르를 출발하기 48시간 이전까지 통관 신청을 하여야 함
- 항구 및 공항의 자유무역 지대에 장치되는 물품 중 환적용 화물에 대해서는 반입 시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고 보세 구역에 벗어나는 경우 신고하면 됨

□ 통관의 종류

- 1) 약식통관
- 2) 정식통관

- 일반적인 통관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름

1.물품도착/신고 전 준비	2. 수입신고	3. 관세납부	4. 물품검사 및 반출
수입허가증 및 라이선스 확인	수입신고, 증빙서류 제출	신고서처리, 관세납부	검사대상물품 검사 물품 반출

- 물품반출 및 반입신고는 모두 무역자동화망((TradeNet)을 통해 이루어지며 관세 등 각종세금, 부과금은 은행간 지로 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결제됨
- 세관은 반출입 화물에 대해 선별적으로 검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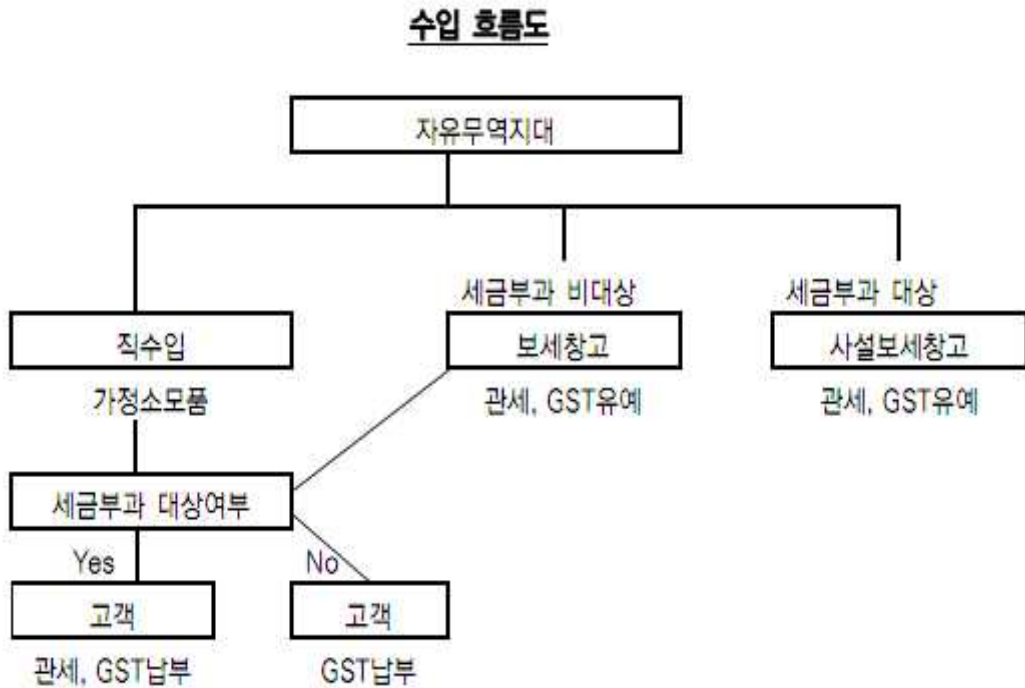
3) 우편통관

- 우편을 통하여 싱가포르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은 Singapore Post Centre를 통하여 통관절차를 밟게 됨
- 400 싱가포르달러 미만의 물품은 GST가 면제되며,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술, 담배)의 경우는 별도검사 및 세금납부를 완료한 후 통관이 완료
-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품목(Controlled Goods)의 경우, 물품은 수입허가를 위해 해당 관리기관으로 보내지며, 수취인은 관리기관을 관을 방문하여 물품을 수령할 수 있음

□ 물품검사 및 보류 및 압류

- 세관은 필요한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 검사를 수행함
- 검사 대상이 된 수입 물품은 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반출이 허가됨
-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종합인증 우수업체(AEO)는 수출시 한국 관세청으로부터 부여받은 AEO 인증번호를 싱가포르 관세청에 통보하면 검사비용 축소,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받음

□ 통관절차 흐름도



□ 통관에 필요한 선적 서류

- 수입신고서는 TradeNet이라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컨테이너화물 (Containerised cargo)과 비컨테이너 화물(Conventional Cargo)로 구분되어 신고됨
-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는 상업송장(CI), 포장명세서(PL), 선하증권(BL) 혹은 항공화물운송장(AWB) 그리고 기타 품목별 필요 서류임
-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수입 신고시 에컨테이너 번호를 제출해야 하며, 수입 신고시에 는 통관을 위해 유효한 허가 내용이 제출돼야 함
- 세관은 선박/항공기명, 원산지, 포장수 및 포장 단위당 수량, 운송 및 보험 비용 등과 같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음
- 통관경비는 관세가 없는 품목의 경우 GST(CIF가격의 7%)외에 기타 통관 수수료 약 50싱가포르달러(건당)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음

- 기본적인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음

물품 도착통보 → TradeNet을 통한 통관 승인 신청 → 통관 승인번호 접수 → 물품 수령 → 수입 검사 → 통관 완료

- 모든 검문소에서의 도착 운송수단과 화물, 승객에 대한 통관은 이민국(ICA, Immigration & Checkpoints Authority)의 감독 아래 진행되며, 검문소에서 이민국직원은 입국하는 운송수단, 화물, 승객 검사를 관리하고, 무역과 세관에 문제가 되는 것은 싱가포르 세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농축산물 수입절차

- ACRA(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사업자 등록 및 CR(할당번호 Central Registration Number)신청
- TradeNet을 통한 수입신고 : 품목별로 해당 정부기관에 수입허가 및 등록을 신청하면 샘플검사를 통해 허가를 내줌
- 동식물, 농수산물 및 식품류는 AVA, 건강식품 및 의약품류는 HSA(Health Science Authority)
- 구비 서류 : 원산지 위생증명서 및 CITES 허가증(동식물 보호협약 관련 허가서), 상업송장, 선하증권 등 관련서류
- 수입상의 냉동 창고 상태 점검 : Veterinary Public Health Laboratories에서 샘플 테스트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수입여부 결정

□ 가공식품 수입절차

- AVA에 수입자 등록 후, 수입업자는 제품 수입 전 품질관리검사를 위해 국가공인검사소로 제품테스트 요청
- 수입허가신청은 TradeNet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정확한 HS코드와 제품 코드, 사업자 등록번호 필요

-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문서로는 원산지 위생증명서 및 검사소의 식품 분석 리포트
- 외교용/개인용/샘플용은 별도 등록이 필요 없지만, 이 외의 상품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초기 적발 시 최고 S\$1,000이며 2회 이상 적발 시 S\$2,000의 벌금을 적용함

□ 재래화물

- 수입을 위해, 상인은 증거 서류(송장, 포장 명세서, 선화증권 등)와 함께 수입통관확인서(수입허가증, 혹은 허가 장소에서의 ATA 까르네)를 물품 통관 장소에서 ICA 직원에게 제출 필요
- 지방소비를 위해 수입되는 제품에 관하여는 상품의 출입 전에 관세 혹은 GST(물품, 용역 소비세) 납부 되어야 함
- 부분 통관이 요구되는 탁송물의 경우, 상인은 전체 통관과 동일한 서류를 제시해야 함

□ 컨테이너 수송 화물

- LCL 컨테이너 : 한명 이상의 수탁인을 위한 제품 혹은 한명의 하주가 보낸 제품. 대개 자유무역지대에서 해체되며, 재래화물과 같이 자유무역지대 출구에서 통관.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해체할 때 세관의 감독이 필요하지 않음. Local LCL컨테이너(환적된 물품 싣고 있지 않음)의 경우 화물운송업자 혹은 무역회사 등의 수탁인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 외부에서 해체할 수 있음
- FCL 컨테이너 : 한 명의 수탁인을 위한 제품이나 한 명의 하주가 보낸 제품. 대개 자유무역지대에서 해체되지 않음. 자유무역지대 출구에서 ICA 직원에 의해 밀봉되거나 밀봉되지 않은 상태로 검사하거나 판매됨. 밀봉된 컨테이너는 싱가포르 세관의 감독 아래 해체되어야함. 밀봉되지 않은 컨테이너의 경우는 세관의 감독 없이 언제나 해체될 수 있음

3. 싱가포르 원산지 규정

□ 원산지 규정

- 일방 또는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수확되거나 생산되어진 것
- 부속서 4A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일방 또는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생산되어 짐으로써 다른 기준 또한 충족하는 것
- 부속서 4B에 포함된 품목들은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수입되었을 때 원산지 상품이라고 봄
- 원산지 재료 또한 상품으로 인정됨
- 원산지 제품을 판정하기 위해 역내 가치 함유비율이 요구 되어질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됨(역내 가치 비율은 백분율로 표시되어짐. 관세가격은 FOB가격에 기초하며, 비 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상품의 제조자에 의해 결정됨)

$$\text{역내가치 함유비율} = \frac{\text{관세가격}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치}}{\text{관세가격}} \times 100$$

- 부속서 A4에 표시된 품목분류의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됨
- 제품에 사용된 비 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제품이 관세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원산지 제품
- 원산지 제품으로써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제품
- 원산지 규정 : 완전생산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보통 혹은 특혜 원산지 증명에 대한 내용

□ 원산지 증명

- 수입국의 규제 권한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 증명은 상품의 상업송장상에 수입자/수출자의 자가증명방식 또는 수입자/수출자의 서류에 의한 증명방식이 있음

- 또한 원산지 증명은 수출국의 공인된 인가가 포함된 원산지 증명 신청서를 통해서도 이루어 질 수 없음
- 원산지 증명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는 보통 원산지 증명과 특혜 원산지 규정으로 불림
- 보통 원산지 증명 : 보통 원산지 증명은 원산지 규정에 따라 싱가포르 영내에서 완전 생산되어 수출된 물품이 수입자를 만족시키는데 쓰일 수 있는 서류
- 특혜 원산지 증명 : 특혜 원산지 증명은 수입자가 특혜제도나 FTA에 의거 하여 물품을 수입할 때 특혜관세 처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서 수출의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서류
- 싱가포르 세관을 통한 원산지 증명 신청

1) 1단계 : 공장/제조시설 등록

- 신청은 제조업자 신청양식 혹은 e-file 신청서를 통해 가능
- 세관직원이 공장의 설비와 인력이 상품 생산을 위해 적절하게 배치되고 작동되는지의 여부 확인
- 적절한 신청서일 경우, 제조업자는 등록번호와 함께 승인서 수신
- 경제 개발부에서 개척자 지위를 수여 받은 기업은 신청서에 개척자 지위에 대한 증거 서류를 첨부할 시 공장 검열을 면제받을 수 있음

2) 2단계 : 제조비용 내역서 제출

- 공장 등록 완료 후, 상품이 원산지 규정 필요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조비용 내역서를 세관에 제출

3) 3단계 : TradeNet 시스템을 통한 원산지 증명서 신청

- 세관에서 제조비용내역서의 확인이 완료된 후 1년의 유효기간
- 제조업자는 수출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신청권한이 주어짐

4) 4단계 : 원산지 증명서 제출

- 승인된 원산지 증명서는 CrimsonLogic Service 부서에 제출

III 싱가포르 검역 정보

□ 식물 검역 제도

- 법령체계 : 식물검역에 관한 사항은 농업 병해충(식물수입) 규칙으로 정함
- 식물(plant) 용어의 정의 : 꽃, 신선과실, 잎, 뿌리, 괴경, 구근, 뿌리대목, 삽수, 휘문 이, 접지, 흙지, 종자, 포트나
- 다른 용기에 자라는 살아있는 식물 및 번식용 또는 번식에 사용될 수 있는 식물의 일 부만 포함
- 수입 금지 : 모든 수입식물 및 식물성 산물에는 금지 병해충이 없어야 함
 - 금지 병해충 목록 : 검역 대상 병해충 150종, 세균 5종, 곰팡이 27종, 마이코 플라즈 마 6종, 바이러스 28종, 기타 병균 11종, 해충 44종, 선충 29종
 - 절대 금지품 : 지역별 금지 (열대 미주국가로부터의 천연 고무나무속 식물, 흙, 코코 아 식물, 오일야자 식물)
- 사전 수입허가를 요하는 품목
 - 생물학적 방제 물품
 - 코코아 식물, 카사바 식물, 감귤속 식물, 코코넛 식물, 커피 식물, 면화 식물, 옥수수 식물, 바나나 식물, 오일야자 식물, 파인애플 식물, 벼 식물, 사탕수수 식물, 차 식물, 고무나무 속 식물 등. 해당 국가에 한함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
- 수출국 식물 검역증의 첨부를 요하는 품목(식물 검역증은 화물이 송부되기 전 14일 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 사전 수입허가를 요하는 품목 전체 (생물학적 방제물품 제외)
 - 포트에 재식된 식물, 식물번식물질, 재식용 식물, 종자류, 벚꽃군사 및 장식용의 잎 및 가지
- 규칙의 적용 면제 : 소비용, 의료용 또는 가공용으로 수입한 식물로써 싱가포르 내에 서 추가적인 번식 또는 재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본 규칙의 적용이 면제 됨. 다

만, 이들 식물에는 병해충이 없어야 함

- 책임면제 : 화물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음

IV 싱가포르 라벨링 정보

□ 라벨링 개요

- 싱가포르는 다양한 국가로부터 신선 및 포장 상태로 식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AVA의 수입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해 서류심사 및 물품대조만을 하고 통관 또는 체류를 허용하며, 라벨링 검사는 판매시점의 AVA 매장 수시 검사를 통하여 실시함
- 싱가포르의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들은 서류심사로 수입허가를 받은 후, 납품 이전에 필요한 추가적인 라벨링을 스티커 작업으로 처리함
- 이는, 싱가포르에 수입되는 식품의 많은 부분이 주변국, 멀리는 중동지역에 재수출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기도 하는 것이며, 더욱 중요하게는 제품에 관한 라벨링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에 두기 위한 조치임

□ 라벨링 기본 표시 사항

- 싱가포르 법령에 따른 자국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기본 표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식품명 또는 설명
 - 구성성분
 - 순중량
 -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 원산지
 - 포장식품의 평균중량 표시
 - 유효기간/유통기간
- 그 이외의 추가 표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비타민 혹은 미네랄의 정확한 함유량 : 비타민 혹은 미네랄이 함유되었다고 선전할 경우
 - 칼로리,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의 함유량 : 영양가에 대한 선전을 할 경우
예) 고칼로리, 고단백, 저칼로리, 무설탕 등

- 싱가포르 법령으로 금지된 표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질병 혹은 질환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내용
- 건강, 신체, 혹은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내용

□ 일반 식품 라벨링 표시사항

1) 기본 표시 사항 및 표시 방법

- 싱가포르 Food Regulations에 따른 일반식품 라벨링 기본 표시 사항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음

	항목	설명
1	표기 언어	영어
2	글자 크기 등	식품명, 구성성분, 순중량 및 tartrazine 함유량은 글자 최소 높이가 1.5mm 이어야 하며, 라벨이 보이도록, 바탕이 열을 때에는 짙은색, 바탕이 짙을 때에는 옅은색으로 인쇄되어야 함
3	제품명 또는 설명	식품의 일반 명칭으로, 실제 제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함. 식품의 성질과 관계가 없는 상표 혹은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식품의 일반 명칭 혹은 설명이 별도로 표시되어야 함
4	구성 성분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기록해야함. 가급적 각각의 함유량을 표시하되, 함유량 표시가 어려우면, 함유량이 많은 성분부터 순차적으로 기록해야 함. tartrazine 색소를 사용했다면, tartrazine 혹은 색소 102 혹은 색소 FD&C Yellow #5 등으로 표시해야 함
5	순 중량	음료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는 식품의 순중량이 표시되어야 함
6	제조사, 수입자, 포장자 또는 유통자의 상호 및 주소	싱가포르의 수입자, 유통자, 대리점 등은 자사의 상호, 주소, 전화 번호 등을 첨부해야함. 수입자는 해외 제조자외에 별도의 라벨링을 해야 함. 싱가포르내 생산자도 자사 정보를 기록해야 함. 전신, 팩스, 우체국 사서함 등은 불가함
7	원산지	수입식품은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함. 국가를 표시해야하며, 도시, 지역 등의 명칭은 불가함
8	포장일자, 유통기한 등	식품의 유효기간은 "Use By", "Sell By", "Expiry By", Best Before" 등으로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며, 글자 높이는 3mm 이상이어야 함
9	표시 위치	"쉽게 보여야 한다" 라는 규정 이외에는 별다른 규정 없음

출처 : AVA

2) 기본 표시 사항 예외 품목

- 구매자 앞에서 계량되어 포장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라벨링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설탕 제과류, 초콜릿 제과류 등에 대해서는 인조색소 함유량, 제조자, 수입자, 포장자 혹은 유통업자의 상호 및 주소만을 기록해도 됨
- 구매자 앞에서 포장되는 제빵류에 대해서는 인조색소 함유량, 식품의 순중량, 제조자, 수입자, 포장자 혹은 유통업자의 상호 및 주소만을 기록해도 됨

3) 표기시 유의사항 및 금지 사항

- 다음의 식품들은 반드시 유통기간 / 유효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1	멸균된 통조림 cream 이외의 모든 저당, whipped, sour cream
2	숙성된 우유 및 우유 드링크류
3	파스퇴르 우유 및 파스퇴르 우유 드링크류
4	저지방, 무지방 요구르트를 포함한 모든 요구르트류
5	파스퇴르 과일 주스 및 파스퇴르 과일 주스 드링크류
6	파스퇴르 야채 주스 및 파스퇴르 야채 주스 드링크류
7	기름에 튀긴 종류를 제외한 모든 콩두부류
8	과일, 야채를 제외한 저온저장을 필요로 하는 식품류
9	비타민이 첨가된 과일 주스 및 과일 주스 드링크류
10	비타민이 첨가된 야채 주스 및 야채 주스 드링크류
11	농축, 무가당, 멸균된 유제품을 제외한 모든 액체 우유 제품
12	밀가루
13	샐러드 드레싱
14	마요네즈
15	건포도 및 sultana(술타나 건포도)
16	초콜릿 혹은 코코아를 특징으로 하는 초콜릿, 초콜릿 음료 및 제과류
17	통조림 형태를 제외한 모든 시리얼
18	이유식
19	식용유

출처 : AVA

-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현/표시는 금지 됨

금지 내용	불허 문구
식품이 질병 또는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 효과가 있다는 주장	- 암 예방 혹은 치료에 효과가 있다 - 혈압을 낮추어 준다
식품이 건강, 신체기능 혹은 신체능력을 향상시켜 준다는 주장	- 섭취후 운동능력이 향상된다 등

출처 : AVA

4) 식품의 라벨링 표기 예시

상품 <버터>	상품 <라면>
	
<p><파프리카></p> 	<p><브라질산 돈육></p> 

□ 건강식품, 특수식품, 식품첨가제 등 표기 방법

- 식품이 일반식품이 아닌, 고단백, 저칼로리, 무가당식품 등이라는 것을 선전하려면, 일반 표시 사항 이외의 추가적인 라벨링을 하여야 함
- 당뇨식품, 저염식품, 무-gluten식품, 저단백식품, 이유식 등과 같은 특정계층을 위한 식품에는 Food Regulations에서 금지하지 않은 비타민, 미네랄, 기타 보조 영양소의 사용이 허용되며, 동 사실을 라벨링에 표기하여야 함
- 식품 첨가제는, Food Regulations에 명시된 첨가제로 제한이 되며 그 사용처와 비율을 제한함
- 다이어트 선전 식품은 AVA 혹은 HPB(Health Promotion Board)에 개별 신청을 접수하며, 승인이 된 후에 동 내용의 라벨링 표시가 가능함

1) 건강 식품의 표기 방법

- 제품의 에너지, 단백질, 저칼로리, 무가당 등과 같은 “영양가” 에 대한 주장을 선전할 경우, 라벨링에는 다음과 같은 영양자료표가 포함되어져야 함

Nutrition Information Panel (규정 양식)		
Nutrition Information		
Servings per package (포장단위당 인분수 표시)		
Serving Size (인분수 표시)		
	per Serving	per 100g(100ml)
Energy	kacl, kJ	kacl, kJ
Protein	g	g
Fat	g	g
Carbohydrate	g	g
영양을 주장한 영양소 또는 기타 영양소 표시	g/mg	g/mg

출처 : HPB

- 제품이 풍부한 비타민 혹은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다고 선전할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Food Regulations에 표시된 <Table II>의 식품 기준수량(중량) 당 <Table I>의 일일권장섭취량의 1/6 이상이 함유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Table I>

품질	단위	일일 권장 섭취량
비타민 A, A alcohol, eater, carotenes	micrograms of retinol activity	750 mcg
비타민 B1, anuerine, thiamine, thiamine hydorchloride, thiamine mononitrate	milligrams of thiamine	1mg
비타민 B2, riboflavin	milligrams of riboflavin	1.5mg
비타민 B6, pyridoxine, pyridoxal, pyridoxamine	milligrams of pyrodoxamine	2.0mg
비타민 B12, cobalamin, cyanocobalamin	micrograms of cyanocobalamin	2.0mcg
Folic Acid, folate	micrograms of folic acid	200mcg
Niacine, niacinamide, nicotinic acid, nicotinamide	milligrams of niacin	16mg
비타민 C, ascorbic acid	milligrams of ascorbic acid	30mg
비타민 D, D2, D3	micrograms of cholecalciferol	2.5mcg
Calcium	milligrams of calcium	500mg
Iodine	micrograms of iodine	100mcg
Iron	milligrams of iron	10mg
Phosphorus	milligrams of phosphorus	800mg

<Table II>

식품	기준 수량(중량)
빵	240g
시리얼	60g
육류, 야채, yeast 들의 extracts	10g
과일 및 야채 주스	200ml
과일 주스 농축액(라벨지시대로 희석)	200ml
과일 주스 cordial(라벨지시대로 희석)	200ml
향신료가 섞인 cordial 혹은 시럽 (라벨지시대로 희석)	200ml
분류, malted	30g
condensed milk	180g
분유 및 함량 51% 이상의 분유	60g
기타 액체 음료 농축액 (라벨지시대로 희석)	200ml
기타 액체 식품	200ml
기타 고체 식품	120g

- 라벨링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음

- (수량) of this food contains(비타민/미네랄 수량)
ex) 200ml of this orange juice contains 15mg of vitamin C
- serving size : 수량표시
each serving of this food contains the following :
Name of Vitamin/Mineral & Percent Recommended & Daily Usage

2) 특수 식품의 표기방법

- 저칼로리 식품은 라벨링에 100ml 혹은 100g당 칼로리 수치를 표기해야하며, 다음의 수치 이하가 되어야 함

- 음료(바로 마실수 있는) : 8kcal/100ml
- 빵에 발라먹는 spread/jam 등 : 100kcal/100g
- 기타 식품 : 50kcal/100g

- 당노식품은 라벨링에 탄수화물이 전체 함량,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각각의 비율을 표기해야함

3) 첨가제의 표기방법

- 다음과 같은 허가된 식품첨가제의 허용수치를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별도로 표기할 필요는 없음

항목	내역	허용 수치
anti-caking agent	calcuim, phosphate, magnesium 등	건조상태에서 2% 이하
anti-foaming agent	dimethyl polysiloxane 등	10ppm 이하
anti-oxidant	ascorbic acid, tocopherol 등	사용사실 표시
artificial sweetening	saccharin, sucralose 등	사용사실 표시
chemical presevative	salt, vinegar 등	제한 없음
	sulphur dioxide, benzoic acid 등	사용내역 표시
colouring	fifth schedule에 허용된 것말 사용	
emulsifier/stabilizer	ester, sucrose acetate	100ppm 이하
flavoring agent	제한품목 이외에는 허용	
flavor enhancer	ethyl maltol, LOcysteine 등	500ppm 이하
gaseous packaging agents	carbon dioxide, nitrogen, helium만 허용	

□ 관련법 및 규정

- 싱가포르의 판매되는 모든 포장 식품류에 대하여 1988년 19월 1일 제정, 2006년 9월 1일 개정된 Sale of Food Act, Chapter 283, Section 56(1)의 Food Regulations에 따른 라벨링을 요구함
- 싱가포르의 식품규정은 식품의 안정성 및 완전성을 확보하고 식품관련 기준을 정의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에 해로운 식품의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싱가포르에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수출자들은 예외 없이 식품에 관한 라벨링 규정을 지켜야 함

□ 라벨링 관련 문제

1) 통관 거부

- AVA는 라벨링에 대한 검사시점을 소매시점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싱가포르 관세청에서는 수입허가서, 원산지 위생증 확인 및 물품대조만을 하며 라벨링의 문제로 통관을 거부하지 않음

2) 유통과정 문제

- 라벨링 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은 초회 SGD 5,000, 2회부터는 SGD 10,000 혹은 3개월 이하의 징역이 적용 됨
- 라벨링의 책임소재는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통관후, 유통 이전에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들은 라벨링을 유의하여 보완하여야 함

V 베트남 시장 정보

1. 베트남 수입추이

□ 김치는 HS CODE는 「2005.99」로 파악되었음

HS CODE	내용
20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으로 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 기타 채소 (냉동되지 아니한 것) (제 2006 호의 물품을 제외한 것): (Other vegetables prepared or preserved otherwise than by vinegar or acetic acid, not frozen, other than products of heading 2006:)
2005.99	기타(Other)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Exporters	Trade Indicators(2013년)				
	수입금액 (USD thousand)	수입점유율 (%)	수입량 (Tons)	단가 (USD/unit)	수입액증가율 (2012-2013,%p.a.)
Total	20,241	100	3,330	6,078	360
1 China	19,698	97.3	3,211	6,135	421
2 Korea	275	1.4	73	3,767	91
3 Thailand	145	0.7	21	6,905	-41
4 Austria	38	0.2	9	4,222	68
5 Japan	27	0.1	4	6,750	-51
6 Italy	24	0.1	8	3,000	245
7 France	15	0.1	3	5,000	-
8 Singapore	13	0.1	0	-	-80

출처 : <http://www.trademap.org/>

- 베트남은 2013년 약 2,024만 1,000 달러 규모의 김치를 수입하였고, 주요 수입국으로는 중국, 한국, 태국, 오스트리아, 일본 등이 있음
- 베트남은 2013년 중국으로부터 1,969만 8,000 달러 규모의 수입을 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421% 증가한 수치로 전체수입량의 97.3%을 차지함
- 중국에 이어 한국으로부터 2013년 약 27만 5,000 달러 규모의 수입을 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91% 증가한 수치로 전체수입량의 1.4%을 차지함

- 3위를 기록한 태국으로부터, 2013년 약 14만 5,000 달러 규모의 수입을 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41% 감소한 수치임

2. 베트남 김치 시장 동향

- 김치는 최근 한류 영향과 김치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으로 베트남 소비자들의 김치 소비는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 소비자들은 집에서 직접 김치를 만들어서 먹고 있으며, 베트남에도 한국김치와 유사한 채소 절임식품이 있으나 고춧가루 등을 사용하지 않는 점이 다른 점임
- 김치는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 사람에 의해 자가 제조되어 유통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한인 슈퍼마켓에서는 마켓별로 자체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고 일부 현지 대형마트는 현지에서 제조된 김치를 납품 받아 판매하고 있는데 현지생산 김치는 달고 짠 맛을 선호하는 베트남 식문화를 반영하여 한국산 김치보다는 덜 맵고 단맛이 나는 것이 특징임
- 한국산 김치의 경우 높은 수출가격과 냉장유통시스템 불충분 등으로 현지 생산품과의 경쟁이 어려운 상황으로 일부 김치 수출업체에서 수출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원가 차이(현지생산 원가의 경우 수출품에 비해 10분의 1정도와 냉장유통시스템 문제로 수출을 포기하였음

3. 베트남 김치 경쟁사 동향

- 베트남 김치 기업 「KIM&KIM」 : 2013년 말 기준 김치 판매만으로 연 3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림. 타 산업에 비고하면 금액적으로 많은 매출이 아닐지 모르나 김치를 팔아 연 30억 이상의 매출을, 그것도 베트남 사람에게 판매하여 소득을 올린 것
- 지난 2005년 2월 호찌민에서 가족형 기업으로 출범한 「KIM&KIM」은 「가장 한국적인 김치」를 앞세워 베트남 시장을 꾸준히 공략, 매년 평균 40~5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베트남에 상당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함
- 나머지 재료 역시 현지 농산물을 이용하지만 유독 고춧가루는 한국산을 고집함. 베트남산 고춧가루가 있지만, 맛이 달라 김치맛을 제대로 내기 어렵기 때문임

-
- 「KIM&KIM」의 생산 품목은 김치를 비롯해 두부류이며, 2014년 6월말 현재 1일 6톤을 생산하고 있고, 생산된 김치와 두부는 베트남 전국에 있는 1,150개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음
 - 베트남 북부 하이퐁으로부터 최남단 까마우 성에 이르기까지 50개 성과 도시(베트남 전국토의 90%)에 걸쳐 점포들이 있음.
 - 베트남 사람에게 김치를 물어보면 그 즉시 「KIM&KIM」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꽤 있음. 이처럼 옹김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김치 브랜드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했음
 - 2014년 4월 최신식 설비를 갖춘 김치공장을 신설한 후 베트남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동남아 시장으로 확장하려는 계획
 - 2014년 5월 베트남 절임식품 및 두부류 식품분야에서는 최초로 ISO22000(HACCP포함) 인증을 획득
 - 김태곤 김앤김 대표는 「베트남의 일부 지역 주민들은 김치라는 단어 자체를 베트남어로 잘못 알고 있다」며 심지어 베트남 행정관청에서 사업허가를 받을 때에도 「김치」가 아닌 「한국 김치」로 분류가 이뤄졌다고 말함
 - 김 대표는 한국의 토종 김치가 베트남인들에게는 다소 맵지만, 호기심으로 한국 김치를 먹어본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찾는다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강조함

VI 베트남 통관 정보

1. 베트남 관세 현황

HS CODE	내용	협정세율
20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으로 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 기타 채소 (냉동되지 아니한 것) (제 2006 호의 물품을 제외한 것) : (Other vegetables prepared or preserved otherwise than by vinegar or acetic acid, not frozen, other than products of heading 2006:)	-
2005.99	기타(Other)	15%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관세의 종류

- 1999년 1월 1일 부터 적용된 개정수출입관세법에서는 일반관세, 특혜관세, 특별 특혜관세가 있음
- 일반관세율 (Ordinary Import Tax Rate)
 - 베트남과 정상무역관계 (NTR) 를 체결하지 못한 국가에 적용
 - 특혜관세율 및 특별 특혜관세율을 적용하는 163개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
 - 우대관세의 150%에 해당하며, 우대관세율의 170%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 특혜관세율 (Preferential Import Tax Rate)
 - 베트남과 정상무역관계 (NTR) 을 체결한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로 베트남에 최혜국 (MFN) 대우를 부여하고 있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며 일본, 미국, EU 등 163개국이 적용대상
 - 개념상 특별특혜관세율 적용국가 포함
- 특별 특혜관세율 (Specially Preferential Import Tax Rate)
 - 베트남과 특혜관세협정을 맺은 국가들 또는 베트남 물품에 특혜관세율을 적용하

는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

- 아세안 회원국간 실시하고 있는 공동실효특혜관세(CEPT), 한-아세안 자유무역(AKFTA) 협정관세, 중-아세안 자유무역(ACFTA) 협정관세가 이에 해당※ 특혜관세 및 특별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 필요
- 이외 긴급수입제한 조치,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의 특별관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적용한 사례는 없음

2. 베트남 통관 제도

□ 통관절차, 세관검사, 세관감시의 원칙

- 수출, 수입, 국경통과 되는 물품 및 출경, 입경, 국경통과 하는 운송수단은 통관절차, 세관검사, 세관감시를 받아야 하며 법률규정에 따른 올바른 경로, 국경관문을 통과해야 함
- 세관검사는 관세관련 국가관리를 보장하고 수출입 활동에 어려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 정보분석, 화주의 법규준수도 평가, 관세법률 위반에 관한 위험정도에 근거하여 실시됨
- 화물, 운송수단은 세관절차를 이행한 후 통관하게 됨
- 통관절차는 법률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시행되어야 함
- 인력 배치 및 업무 시간은 수출, 수입 및 입국, 출국, 국경통과 활동에 부합되도록 배치되어야 함

□ 세관 신고

- 세관신고는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진행됨
- 신고서의 내용에 따라 명확하게 신고해야 함
- 신고자가 전자신고형식을 이용할 수 있음

□ 통관절차 대리인

- 통관절차 대리인은 수입·수출화물에 관한 통관절차 업무 권한과 의무를 가진자로 부터 위임을 받은 세관신고인임
- 통관절차 대행인은 관세법률과 세관신고 업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법률적 책임을 짐. 정부는 통관절차 대행인의 등록과 활동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베트남 통관 수속

□ 통관절차

- 통관절차 시 세관 신고자의 의무
 - 세관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함. 통관서류에 속한 증명서류를 제출함. 전자통관 절차시 세관신고인은 세관의 전자자료처리시스템을 통해 통관서류를 작성 및 전송함
 - 물품, 운송수단에 대한 실물검사를 위해 규정된 장소로 물품, 운송수단을 이동함
 - 법률규정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고 기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함
- 통관절차 시 세관 직원의 의무:
 - 통관서류를 접수 및 등록함. 전자통관 절차시 전자자료처리시스템을 통해통관서류를 접수 및 등록함
 - 통관서류 심사 및 화물, 운송수단을 실제로 검사하고, 법에 따라 세금 및 기타 비용 징수하여, 화물, 운송수단의 통관을 결정함

□ 통과절차 장소

- 통과절차를 하는 장소는 국경관문 세관지국과 국경관문 외에 세관지국이임. 전자통관절차 시 통관서류 접수 및 처리장소는 성, 성 합동, 중앙직할시의 관세사무소가 될 수 있음. 필요한 경우 관세총국 총국장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장소에서 수출 및 수입 물품에 대한 실물검사가 실시할 수 있음

□ 통관서류

- 통관서류는 다음 사항을 포함

- 세관신고서
- 상업영수증
- 물품매매계약서
- 법률에 허가서가 필수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수출, 수입, 국경통과 물품과 출경, 입경, 국경통과 운송수단에 대한 관할 국가기관의 허가서
- 세관신고인이 법률규정에 따라 관세기관에 제출 또는 제시해야 하는 물품별증명서류
- 통관서류는 문서서류 또는 전자서류가 될 수 있음. 전자서류는 법률규정에 따른 완전성과 형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통관서류는 관세기관에서 제출, 제시될 수 있음.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해당 관세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된 경우, 통관서류에 속한 일부 증명서류의 제출기한연장 물품, 운송수단의 실물검사 시점 변경 또는 물품 실물검사 면제결정 시점이전의 세관신고서의 보완, 수정, 교체 잠정 세관신고서의 제출 및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수정 완료 일정한 물품에 대해 일정기간 다수 수출입 건에 대한일회신고가 허가됨

□ 물품 및 운송수단의 통관

- 물품, 운송수단은 통관절차가 완료된 후 통관됨

- 다음의 경우, 통관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물품, 운송수단도 통관될 수 있음

- 통관서류 중 증명서류가 일부 누락되었으나 관세기관이 기한내 추후 제출에동의한 경우
- 규정된 기한내에 세액은 완납하지 못하였으나 신용기관 또는 은행활동이 허가된 기타 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 대해 보증한 경우. 관세관련 법규규정에 따라 세액납부의 유예가 허가된 수출입 물품 제외

- 화주, 운송수단주가 관세관련 행정처벌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했거나, 신용기관 또는 은행활동이 허가된 기타 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벌금액에 대해 보증한 경우

- 수출 및 수입 허가여부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 물품이나 화주가 보관을 희망하는 경우, 관세기관은 세관감시에 관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가함. 수출, 수입

이 허가되었으나 납부해야 하는 세액 산정을 위해 가격확정, 감정자문, 분석, 분류가 필요한 경우, 화주가 이 조 제2항 제b호, 제3항 규정에 따른 자진신고, 자진산정에 근거한 세액관련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 통관될 수 있음. 납부해야 하는 정확한 세액은 가격확정, 감정자문, 분석, 분류결과에 따라 확정됨

- 긴급한 요구가 있는 수출, 수입 물품의 통관은 이 법 제35조 규정에 따름

4. 베트남 수입식품 검사절차

□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베트남 보건부의 식품관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세부적인 수입식품검사절차는 아래의 ①~⑥의 순서에 따라 진행

① 수입식품 신고

- 베트남 국내 판매를 위해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 내용이 규정에 적합하다는 확인이 있어야함

② 신고서류

-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 기준 신고서 1부
- 기업의 기초 기준서 2부 : 식품수출기업의 직인, 인정기준, 생리화학기준, 미생물 기준, 중금속기준, 식품첨가물기준, 사용기한, 사용방법, 보관방법, 제조공정 등을 포함
- 원산지지 국가의 검사당국으로부터 취득한 해당식품의 주요성분 및 안전위생기준에 대한 품질검사결과서 또는 베트남에서 지정하는 기술기관의 검사결과인증서
- 식품수출기업 직인이 포함된 식품표시내용서 또는 상품표시제안서. 원산지지 국가의 관계당국으로부터 취득한 자유판매인증 및 보건인증
- 특수식품(의학적 치료에 사용되는 영양식품, 중환자 영양 공급을 위한 식품, 필수 영양소 보조 식품 및 기능성 식품)의 경우, 신고서류에는 연구 및 임상실험 결과 기타 관련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보건부가 지정한 당국의 식품안전, 위생 및 품질분석 결과가 첨부되어야 함(베트남에서 분석이 불가능 할 경우 원산지지 국가나 제 3국 검사당국의 검사결과도 인정)

③ 신고서류 심사

-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관리국에서 서류접수 후 법규 준수여부 심사. 서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해당기관은 서류 검토
- 규정을 준수하여 정확한 품질기준신고를 한 경우는 서류심사 종료 후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 관리국의 직인이 첨부된 기업의 기초기준서 사본 1부 반환
- 신고기준이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기업에 통보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품질기준신고를 재작성토록 함

④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검사

- 수입식품이 반입된 지역의 검사당국은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 등록을 위한 검사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
 -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요건 관리규정에 기초하여, 안전·위생 및 품질에 대한 강제 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 기간동안 적용되는 수입식품목록 공표
 - 베트남 정부와 외국 간의 상호인정협정(MRA) 또는 국제기구 감독하에서 허가받은 조직·기관의 인증을 취득한 수입식품은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 관련법에 대한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가 아니면 검사대상에서 제외
- ※ 베트남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관리국은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며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 검사 책임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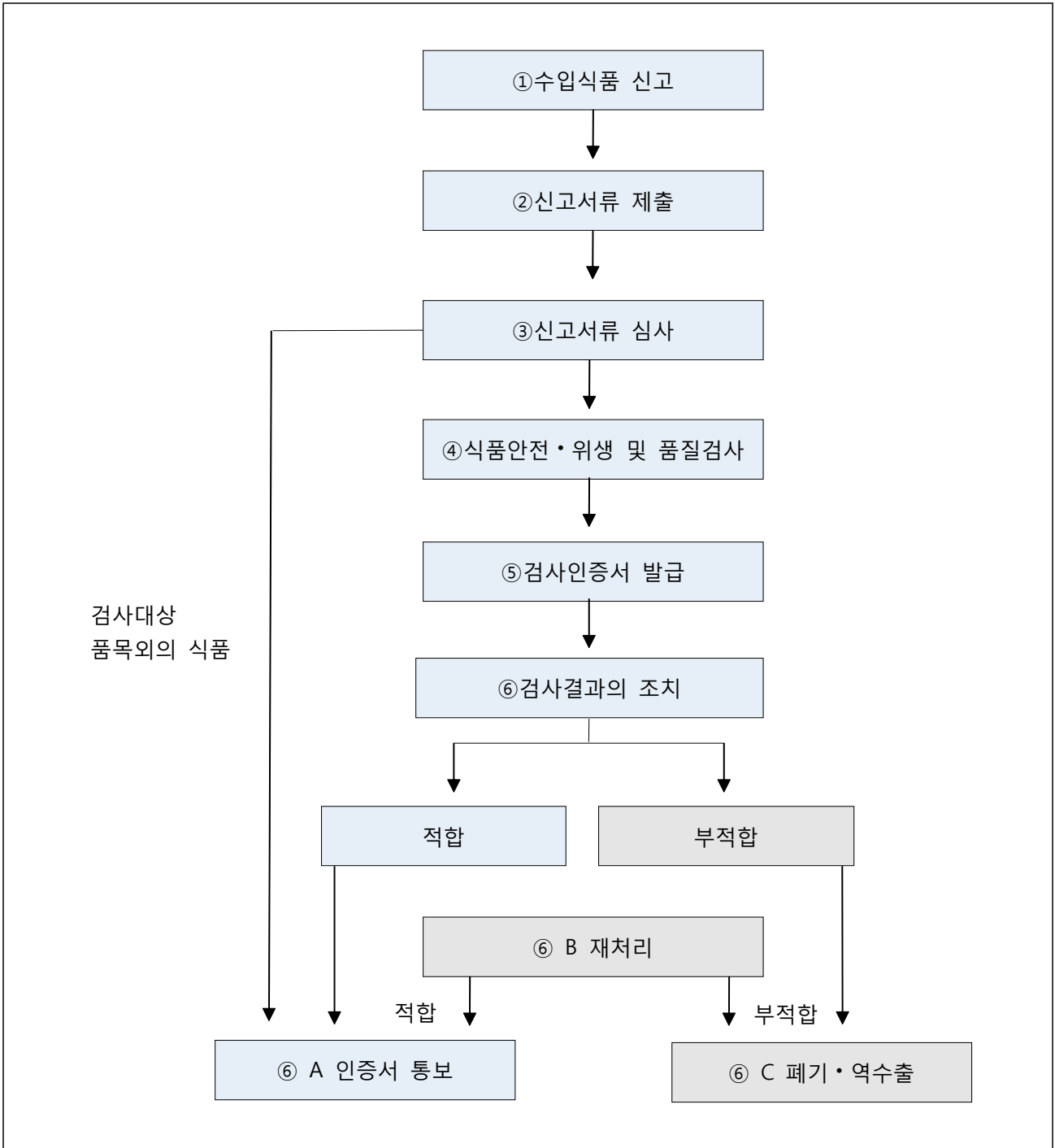
⑤ 검사인증서 발급

- 국가 품질관리대상 수입식품일 경우 해당기관에서 제시하는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검사서 적합판정인증서를 받아야함
- 위에서 언급한 목록에서 정하지 않는 수입식품은 식품위생·안전 및 품질관련 법에 대한 위반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만 검사를 받음

⑥ 검사결과의 조치

-
- 위생·안전 및 품질 요건을 만족한 경우, 인증서가 세관에 통보되고 만족하지 못한 수입식품은 베트남 식품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처리, 폐기 또는 반송되어야 함
 - 베트남 식품관리청에서 재처리승인을 받아 재처리한 식품은 재검사하여 검사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베트남 식품관리청의 수입식품검사 과정



Ⅶ 베트남 검역 정보

□ 개요

- 원칙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식자재,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식품포장용구, 식품포장재, 식품용기는 검사의 대상이 됨. 단, 개인이 휴대하는 관세면제 범위 내의 자가소비용 식품, 외교관·영사관의 수하물에 포함된 식품, 일시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전시회 참가 등), 보세창고에 보관되는 식품, 시험용·연구용 식품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됨 (시행령 No.38/2012/ND-CP 제 14조)
- 이와 관련 보건부가 공포한 「위생 및 안전성 감사가 의무화된 HS코드별 수입식품에 관한 결정 No.818/QD-BYT」은 다음 13개 품목을 수입검역이나 검사가 필요한 품목으로 정하고 상세한 것은 별표에 HS코드별로 정하고 있음.

□ 검역·검사대상 13개품목

- ① 동물성/식물성 유지(油脂)
- ② 우유 및 각종 유제품
- ③ 설탕 및 각종 설탕과자
- ④ 카카오/카카오 성분을 포함한 각종 조제품
- ⑤ 곡물/곡분/전분/우유조제품, 베이커리제품
- ⑥ 커피 차 후추
- ⑦ 야채/과일로 만든 조제품
- ⑧ 조미료
- ⑨ 음료 알콜음료 식초
- ⑩ 식품포장재
- ⑪ 기능성식품, 건강보호상품
- ⑫ 식품첨가물
- ⑬ 고기/어류의 조제품

- 상기 품목의 수입에 대해 상품도착 5일전까지 검역등록을 할 필요가 있음. 검역등록에 필요한 서류, 절차는 다음과 같음(No.23/2007/QD-BYT 제6조,제10조)
- 필요서류

- 검역검사등록서
- 검사제품이 해당하는 품질기준 사본
- 통관절차에 필요한 서류
- 품질기준이 공표되어 있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제조자에 의한 검사보고서
- 기타 검사의 간략화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 신청수순

- 검사기관(보건부 또는 공공의료위생원)에 서류 제출 (상품도착 5일전까지)
- 검사기관은 서류심사 후 검사예정방법을 확인하고 검사일정을 통지
- 검사 실시(종류, 규격, 포장, 라벨, 수량, 상태 등)
- 샘플 분석, 기초기준과 베트남기준(TCVN)을 비교후 결과 통지

* 베트남 국가기준(TCVN)은 식품별로 상세히 설정되어 있으며 베트남 품질측량국에서 구입할 수 있음(유료 판매)

□ 식물성 식품의 수입규제

- 식물성 식품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베트남이 수출국으로 인정한 국가로부터의 수입이어야 하고 적절한 포장과 저장으로 라벨표시 규제에 따를 것이 요구됨. (식물성 수입식품의 위생·안전에 관한 농업농촌개발부 (통지 No.13/2011/TT-BNNPTNT 제5조 1항 참조※)

※ No.05/2013/TT-BNNPTNT에 의해 일부 개정됨

VIII 베트남 라벨링 정보

1. 일반 조항

□ 적용 범위

- 정부는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상품 및 수출입 상품들의 라벨에 대한 관리 및 작성하는 방법 및 내용을 규정함
- 다음 물건들은 이 법령의 규제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부동산
 - 상품무역 박람회 및 전시회에 참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하여 재수출하는 상품 또는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 국경 게이트에서 전송하는 상품
 - 선물, 기부금, 출국·입국하는 사람들의 수하물 이동자산
 - a, b, c 조항에서 규정하는 대상 외에 시장의 발전에 따라 국가기관에서 추가 제안한 것

□ 적용 대상

- 라벨링 법령은 베트남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개인, 단체 및 상품을 수출입하는 개인 및 단체에 적용됨

□ 라벨링 의무사항

-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 및 수출입 상품은 이 법령의 규정에 의해 라벨을 부착해야 함
- 라벨 필요없는 상품
 -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판매되는 신선식품으로 포장없이 가공하게 되는 식품
 - 소비자와 협정에 의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포장 없는 연료, 원재료 (농산물, 수산물, 임산), 건축 재료 (벽돌, 타일 석회, 모래, 돌, 자갈, 시멘트, 흙, 유발, 상업 혼합 콘크리트), 스크랩 (생산, 판매)

-
- 베트남 상품을 수출입하는 외국 개인 및 단체의 경우 상품 판매 계약에 의해 상품의 라벨링 요구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베트남 법률 및 수입국가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아야 함

□ 라벨링 위치

- 상품의 라벨은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에 부착하여야 하며,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
- 라벨에 모든 필수내용을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
 - 상품의 라벨에 내용, 상품명, 상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개인 및 단체의 이름, 중량, 제조일자, 유통기한 표시해야 함
 - 다른 요구 내용은 상품에 첨부된 서류에 기록하고, 상품의 라벨에 그 내용을 적는 장소도 기입해야 함

□ 라벨링 치수

- 상품의 라벨을 기록하는 책임을 지는 개인 및 단체는 상품의 치수를 스스로 확인해야 하지만 이 법령의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에 따라 전체 필수 내용을 완전히 기록해야 하고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라벨링 형태

- 상품의 라벨에 기록된 문자의 색깔, 숫자, 그림, 사진, 손짓, 기호가 뚜렷해야 함. 규정에 따라 필수 내용들에게 문자, 숫자의 색깔이 상품의 라벨 배경색상과 대조해야 함

□ 라벨링 표기언어

- 상품의 라벨에 필수 내용들은 베트남어로 기록해야 함. 이 법령의 제 4 조에 규정된 경우 제외
- 이 조항의 1항에 있는 규정 외에 국내에서 생산해서 유통하는 상품의 라벨에 외국어로 표시 가능함. 외국어 표시내용은 베트남어 표시내용과 동일해야 함. 외국어로 작성된 글자의 치수는 베트남어로 작성된 내용의 글자의 치수보다 더 크면 안 됨

- 베트남에 수입된 상품으로 라벨에서 베트남어로 필수내용이 아직 표시되지 않거나 충분한 내용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베트남어로 필수 내용이 나타나는 별도 라벨을 추가해야 하며, 오리지널 라벨을 유지해야 함. 베트남어 표시내용은 오리지널 라벨링 내용과 상응해야 함
- 다음 내용에서 오리지널 라틴 알파벳이 있는 외국어로 쓸 수 있음
 - 인체용 의약품의 베트남어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나 과학 이름
 - 국제 이름이나 화학물질의 화학공식, 구성공식 첨부된 과학 이름
 - 베트남어로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 상품의 국제 이름이나 성분, 양적 성분의 과학 이름
 - 외국 제조업체, 상품 프랜차이즈의 이름 및 주소

□ 상품의 라벨을 기록하는 책임

- 상품의 라벨 및 부가 라벨의 내용은 성실성, 뚜렷함, 정확함을 보장해야 하며 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함
 - 베트남에서 생산, 제조, 가공, 포장해서 유통하는 상품이라면 그 상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단체는 라벨을 기록하는 책임을 져야 함
 - 베트남에서 생산하거나 가공해서 수출하기 위한 상품이라면 그 상품을 수출하는 개인 및 단체는 라벨을 기록하는 책임을 져야 함
 - 기존 라벨이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령의 제9조 3목의 규정에 따라, 수입한 개인 및 단체는 기존 라벨을 잘 보관하고, 유통하기 전에 부가 라벨을 추가해야 함

2. 상품의 라벨에 대한 위반 처리

□ 상품 라벨링에 대한 위반 처리 재판권

- 인민 경찰 기관, 항구에 설치되는 세관사무소, 시장관리, 상품의 품질관리, 전문화된 검찰관 및 기타기관은 할당하게 되는 직능, 책임, 권한 범위 중에서 상품의 라벨에 대한 위반 행위를 탐지할 시 현재 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권한이 있음

□ 생산유통 및 수출입하는 개인, 단체에게 위반 처리

- 상품의 라벨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개인, 단체는 위반의 본질과 심각성에 따라 행정처벌이나 형사책임 처벌 가능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규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함

□ 국가 관리기관 소속에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위반 처리

-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남용해서 상품의 라벨에 대해 합법적인 활동을 방해하거나 법을 위반한 사람은 위반의 본질과 심각성에 따라 행정 위반 처벌나 형사 책임 처벌 가능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의 규칙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함

3. 품목별 표기방법

□ 상품의 라벨링 필수표시사항

- 상품의 라벨에다가 다음 내용을 반드시 표기해야 함

- 상품의 이름
-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개인, 단체의 성함 및 주소
- 상품의 원산지

- 이 조항의 1번에 규정된 내용 외에 상품의 특징에 따라 이 법령의 제12조에 반드시 명시된 내용, 법률 문서 및 관련된 전공 법령 규정에 표시해야 됨

□ 상품의 특징에 따라 라벨링 필수표시사항

1. 곡물

- a) 중량
- b) 제조 일자
- c) 유통기한

2. 식품

- a) 중량
- b) 제조 일자
- c) 유통기한

-
- d) 성분이나 중량 성분
 - ㄷ) 위생, 안전에 대한 경고 및 안내
 - e) 사용법, 보관 안내

3. 음료수(술 제외)

- a) 중량
- b) 제조 일자
- c) 유통기한
- d) 성분이나 중량 성분
- ㄷ) 위생, 안전에 대한 경보 및 안내
- e) 사용법, 보관 안내

4. 술

- a) 중량
- b) 에타놀 (etanol) 함량
- c) 보관 안내 (와인 경우)

5. 담배

- a) 중량
- b) 제조 일자
- c) 위생, 건강 안전에 대한 경고 및 안내

6. 식품의 첨가물

- a) 중량
- b) 제조 일자
- c) 유통기한
- d) 중량 성분
- ㄷ) 사용법, 보관 안내

7. 사료

- a) 중량
- b) 제조 일자
- c) 유통기한
- d) 중량 성분
- ㄷ) 사용법, 보관 안내

□ 상품명

- 생산 및 사업 개인, 단체가 스스로 라벨에서 적는 상품명을 정하고, 상품의 효능 및 특성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상품명을 정확하게 지어야 함
- 상품 성분에 있는 물질의 이름을 사용해서 상품 이름이나 상품 이름의 일부분을 짓는 경우에는 그 성분의 용량을 반드시 써야 함. 이 법령의 제 18 조 4목에서 지정하는 경우 제외

□ 상품의 중량

- 측정단위로 중량을 측정하는 상품은 베트남 법에 따라 측정단위를 표시하고, 중량으로 중량을 측정하는 상품은 숫자로 써야 함
- 동일 포장중에서 여러 상품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상품 단위 별로 중량 및 상품 총 단위의 중량을 써야 함. 또한 상품 단위별로 중량 및 상품 단위의 수량을 써야 함

□ 제조일자, 유통기간, 보관기간

- 상품의 제조일자, 유통기한, 보관기한은 양력 연도에 따라 일, 월, 년으로 순서대로 씀
 - 일, 월, 년을 표시하는 숫자는 두 자릿수로 표시하고 년을 표시하는 숫자는 네 자릿수로 표시 가능함. 그리고 일, 월, 년을 표시하는 숫자는 같은 줄로 표시해야 함
 - 생산 시간을 월(달)로 표시하는 규정인 경우에는 양력 년도의 월 및 년의 순서대로 표시해야 함
 - 생산 시간을 연으로 표시하는 규정인 경우에는 양력 년도의 숫자 4 개를 표시해야 함
- 이 법령에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 및 보관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상품인데 상품의 라벨은 이 조항의 1목의 규정에 따라 제조일자를 작성하게 되었으면 상품의 유통기한이나 보관기한은 제조 일자부터 기간으로 표시 가능함

- 이 조항에 1목에 있는 규정과 다른 시간에 대해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 상품이라면 이 법령의 부록II에서 지정함

□ 상품의 원산지

- 원산지를 기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게 됨. 「어디에서 생산」이나 「어디에서 제조」나 「원산지」와 상품의 생산국가 또는 지역의 이름을 기록함
- 베트남에서 생산하여 유통하는 상품은 그 상품을 생산하는 장소의 주소를 기록한 경우 상품의 원산지를 기록할 필요없음

□ 성분, 중량성분

-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란 원재료 및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완제품에서 존재하는 첨가물을 의미함. 또한 변경된 원자재의 형태인 경우를 포함
 - 상품에 관심을 끌기 위해 라벨에 나와 있는 원재료 성분의 이름을 표시할 시그 원재료 성분의 중량도 표시해야 함
- 중량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란 성분 및 성분별로 하나씩 중량을 표시하는 것임. 상품의 특성 및 상태에 따라 표시된 중량 성분은 상품 한 단위에서 그 성분의 용량으로 표시하는 것임. 혹은 다음 비율 중 하나에 의해 표시: 용량 및 체적 용량의 퍼센트 체적의 퍼센트
- 일부 상품 종류에게 성분, 중량 성분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함
 - 성분은 첨가물이라면 첨가물 그룹 이름, 첨가물 이름, 국제 코드 (있는 경우)를 써야 함. 또는 첨가물은 감미제, 색소가 포함되며, 위의 내용에 따라 표시하는 것 외에 「자연」 물질이나 「합성」 물질인지도 표시해야 함
 - 인체용 의약품, 백신, 질병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생물 기원의 제품, probiotics 생물 제품, 동물용 의약품, 식물보호 의약품이라면 활성 화합물의 성분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함
 - 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의 성분 및 첨가물을 포함해서 표시해야 함
 - 금속 가구, 사용 가치를 결정하는 메인 재료로 만든 도구라면 메인 원재료 성분의 이름 및 상품명을 표시해야 하고 성분 및 양적 성분으로 표시할 필요 없음

□ 수입식품 라벨링



출처 : www.kita.net

※ 참고자료

- GTA : <http://www.gtis.com/>
- 관세청 : <http://www.customs.go.kr>
- 구글 : <http://www.google.com>
- 글로벌윈도우 : [http://www,globalwindow.org](http://www.globalwindow.org)
- KATI : <http://www.kati.net>
- AVA : www.ava.gov.sg
- SFMA : www.sfma.org.sg
- SIFST(Singapore Institute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 www.sifst.org.sg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 www.qia.go.k

※ 참고자료

- AVA : www.ava.gov.sg
- SFMA : www.sfma.org.sg
- SIFST(Singapore Institute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 www.sifst.org.sg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 www.qia.go.kr
- 농수산물식품 수출지원정보 : <http://www.kati.net/>
- 관세청 : www.customs.go.kr
- GTA : <http://www.tradestatistics.com/gta/>